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28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김대식 · 김용태 · 윤한홍  
유용원 · 최은석 · 박준태  
성일종 · 박형수 · 김미애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

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민원 대응조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민원에 있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민원 대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원을 대응하는 교원이 아닌 교원의 동석
2. 민원 대응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민원을 대응하는 교원 및 제1호에 따른 교원의 개인 연락처 등의 제공 제한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악의적 민원(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대응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후의 악성민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대응팀이 담당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악성민원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 대응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0조의2(민원 대응조치 등) ①</p> <p><u>교육부장관은 민원에 있어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이 를 교육감과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u></p> <p>②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민원 대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p>1. <u>민원을 대응하는 교원이 아닌 교원의 동석</u></p> <p>2. <u>민원 대응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 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u></p> <p>3. <u>민원을 대응하는 교원 및 제1 호에 따른 교원의 개인 연락처 등의 제공 제한</u></p> <p>③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 악의적 민원(이하 “악 성민원”이라 한다)으로 교원에 게 신체적 · 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u></p>

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대응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후의 악성민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대응팀이 담당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악성민원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 대응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